

특허법·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(안) [요약]

(’25. 8월, 특허제도과)

1 개정 배경

- 늦은심사 및 대리인 해임절차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출원인 친화적 특허제도를 정립할 필요
- 기재서식의 각종 미비점을 진단 및 개선하여 행정효율성 향상 및 이를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

2 주요 개정내용

연번	개정 내용(안)
1	대리인 해임에 대한 증명절차 강화 ☞ [§5조 등] 대리인 해임 시 출원인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여, 출원인 의사에 반하는 대리인 해임사태 방지
2	심사유예 신청에 대한 취하(또는 유예희망시점변경)가능기간 확대 ☞ [§40조의3 등] 심사유예를 언제든지 취하(또는 유예희망시점 변경) 가능하도록 개정하여, 출원인의 심사시점 선택폭 확대
3	서류의 방문수령 장소에 대한 문구통일 ☞ [서식] 서울, 서울 송달함 등 통일되지 않은 방문수령 장소의 문구를 통일하여, 출원인 혼란방지
4	국가 R&D 출원의 통계정확성 제고 ☞ [서식] 국가 R&D 출원에 대한 과제고유번호 수집체계 미비점을 개선하여, 국가 R&D 출원에 대한 통계정확성을 제고
5	심판청구서 서식정비를 통한 심결품질 제고 ☞ [서식]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에 대한 원고의 해석 및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을 유도하여, 심결품질 제고 및 심판절차 효율성향상 도모

3 향후 일정

- 입법예고 등(’25. 9~11월) → 법제처 심사(’25. 11~12월) → **공포·시행**(’26. 1월)

특허법 ·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(안)



2025. 8.

**특허심사기획국
특허제도과**

목 차

I . 개정 배경	1
II . 개정 사항	2
1. 대리인 해임에 대한 증명절차 강화	2
2. 심사유예신청 취하 가능기간 등의 확대	4
3. 서류의 방문수령 장소에 대한 문구통일	6
4. 국가 R&D 출원의 통계정확성 제고	9
5. 심판청구서 서식정비를 통한 심결품질 제고	11
III . 추진 일정[안]	12
【붙임 1】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	
【붙임 2】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	

I . 개정 배경

□ 출원인 친화적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

- 출원인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, 출원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된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해임 가능한 상황

☞ **대리인 해임에 대해 출원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마련 필요**

- 전략적으로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수요*는 증가하고 있으나, 현재 늦은심사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늦은심사 신청은 저조

* 표준특허, 제약·바이오 등 특정분야의 출원인은 시장상황 및 표준화동향을 고려하여, 전략적으로 늦은 심사를 희망[KT('25.5), ETRI('25.1), 한국제약바이오협회('24.6)]

☞ **늦은심사 제도상의 한계점 개선을 통해,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필요**

□ 기재서식상의 미비점 정비를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

- 특허절차에 대한 서류를 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(방문수령)가 존재하나, 동일한 방문수령 장소에 대한 문구는 제각각인 상황

☞ **혼란을 유발하는 문구를 통일하기 위한 기재서식 정비 필요**

- 현재 기재서식상의 미비점으로 인해, 국가 R&D 성과물에 대한 특허성과* 집계 일부가 누락될 수 있는 상황

* 현재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도 측정 및 관리를 위해 국가 R&D 성과물의 특허출원 통계를 집계 중(한국특허전략개발원)

☞ **기재서식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국가 R&D 성과물의 특허성과 집계 누락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**

- 심판청구서의 미비점으로 인해, 무효 심판단계의 절차적 비효율 발생

☞ **무효심판 단계의 절차적 효율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심결품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, 심판청구서 개선 필요**

Ⅱ. 개정 사항

1

대리인 해임에 대한 증명절차 강화

(「특허법 시행규칙(특칙)」 제5조 및 별지 제2호서식)

□ 제도 개정이유

- (제도현황) 대리인 선임 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* 제출 필요 반면, 해임 시에는 증명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해임가능

* 관련 증명서류를 통해 위임자의 서명 혹은 날인, 위임내용 등을 확인 →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의사를 확인가능

- (개정이유) 출원인 의사와 관계없이, 신고서만 제출하면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해임가능 → 대리인 해임에 대한 증명절차 강화필요

□ 개정 내용

-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,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의무 신설

< 「특칙」 제5조 >

현 행	개정안
제 5 조 (대 리 인 의 선 임 등) ① ~ ④ (생 략)	제 5 조 (대 리 인 의 선 임 등) ① ~ ④ (현 행 과 같 음)
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	⇒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 되,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⑥ ~ ⑨ (생 략)	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* 「실칙」 §17조(「특칙」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< 「특칙」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일부 >

현행	개정안
대리인(대표자)에 관한 신고서 [신고 구분] ☐ 대리인 선임 ☐ 대리인 해임 ☐ 대리인 사임 ☐ 복대리인 선임 ☐ 복대리인 해임 ☐ 복대리인 사임 (생략)	대리인(대표자)에 관한 신고서 [신고 구분] ☐ 대리인 선임 ☐ 대리인 해임 ☐ 대리인 사임 ☐ 복대리인 선임 ☐ 복대리인 해임 ☐ 복대리인 사임 (현행과 같음)
7. [첨부서류]란 가.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(1)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(대리인 선임, 복대리인 선임,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,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, 대표자 선임 및 대표자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(생략)	7. [첨부서류]란 가.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⇒ (1)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(대리인 선임 및 해임, 복대리인 선임, 대리인 위임사항 변경, 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, 대표자 선임 및 대표자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(현행과 같음)

* 「실칙」 §17조(「특칙」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☐ 개정 효과

- 대리인 해임신고에 대한 증명절차를 강화하여, 출원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대리인 해임사태 방지

심사유예신청 취하 가능기간 등의 확대

(「특칙」 제40조의3 및 「실칙」 제10조의3)

□ 제도 개정이유

- **(제도현황)** 출원인이 심사청구순위에 비해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, 유예하여 심사받으려는 시점(유예희망시점)을 선택* 가능

* 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~ 출원일로부터 5년(실용신안은 3년) 중 선택

< 심사유예제도 개요 >



- **(개정이유)** 출원인이 심사유예를 취하(또는 유예희망시점 변경)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*, 시장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응에 한계**

* **한국**은 심사유예를 신청한날 부터 **2개월** 이내에만 취하가능,
유사제도를 운영 중인 **미국**(심사유예)·**중국**(지연심사) 등은 신청 후 **언제든지** 취하가능

** 상용화 지연을 예상하여 수년 후로 심사를 유예했으나 조기 상용화가 필요한 경우, 취하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여 유동적 대응에 한계[현장소통간담회('25.)]

□ 개정 내용

- 심사유예 취하(또는 유예희망시점 변경) 가능기간을 유예 신청 후 **2개월** → **언제든지 취하(또는 유예희망시점 변경*) 가능하도록 개정**

* 다만, 유예하여 심사받기를 원하는 시점으로 과거를 선택하는 것은 모순인 바, 유예희망시점 보정서 제출일 이전으로 유예희망시점을 선택하는것은 불가

< 「특칙」 제40조의3 >

현행

제 40 조 의 3 (특 허 출 원 심 사 의 유 예)

① (생 략)

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**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**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개정안

제 40 조 의 3 (특 허 출 원 심 사 의 유 예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**다만, 유예희망시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.**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< 「실칙」 제10조의3 >

현행

제 10 조 의 3 (실 용 신 안 등 록 출 원 심 사 의 유 예)

① (생 략)

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**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**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개정안

제 10 조 의 3 (실 용 신 안 등 록 출 원 심 사 의 유 예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**다만, 유예희망시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.**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□ 개정 효과

- 급변하는 시장상황 및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, 출원인이 다양한 특허권 확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시점 선택폭 확대

서류의 방문수령 장소에 대한 문구통일

(「특칙」 별지 제8호, 제19호, 제29호 및 제29호의2 서식)

□ 제도 개정이유

- **(제도현황)** 출원인 등이 특허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수령받고자 하는 경우, 정부대전청사 혹은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 수령
- **(개정이유)** 동일한 서류수령 장소임에도, 서울, 서울 송달함 등 기재서식상 장소에 대한 문구가 통일되지 않아, 출원인 혼란* 발생

* 서울과 서울 송달함 및 대전과 대전 송달함의 차이에 대한 문의 등

□ 개정 내용

- 서류수령 장소에 대한 문구를 정부대전청사 및 서울사무소로 통일

< 「특칙」 별지 제8호서식(서류반려요청서 등) 뒤쪽 기재요령 중 일부 >

현 행	개정안
7. 【반려(반환)서류 수령방법】란	7. 【반려(반환)서류 수령방법】란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제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"온라인 수령", " 방문수령(대전) ", " 방문수령(서울) " 및 "우편수령"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	나. 서류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"온라인수령", " 방문수령(정부대전청사) ", " 방문수령(서울사무소) " 및 "우편수령"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다. 대리인[변리사 또는 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]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"온라인수령", " 방문수령(대전 송달함) ", " 방문수령(서울 송달함) " 및 "우편수령"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	⇒ 다. (삭 제)

* 「실칙」 §17조(「특칙」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< 「특칙」 별지 제19호서식(증명신청서 등) 뒤쪽 기재요령 중 일부 >

현 행	개정안
6. 【수령방법】란 가. “방문수령(대전)”, “방문수령(서울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나. 대리인[변리사 또는 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]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“방문수령(대전 송달함)”, “방문수령(서울 송달함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다.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“온라인수령”, “방문수령(대전 송달함)”, “방문수령(서울 송달함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라. 다만, 신청한 서류 중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는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에 한정하며, 취소신청 관련 서류 및 심판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. 1999년 1월 1일 전에 제출된 등록원부기록관련서류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. 마.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에 따라 부여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는 특허로 (www.patent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	6. 【수령방법】란 가. “방문수령(정부대전청사)”, “방문수령(서울 사무소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나.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“온라인수령”, “방문수령(정부대전청사)”, “방문수령(서울사무소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다. 다만, 신청한 서류 중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서류는 1999년 이후 출원되고 공개된 출원서류에 한정하며, 취소신청 관련 서류 및 심판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. 1999년 1월 1일 전에 제출된 등록원부기록관련서류도 온라인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. 라.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에 따라 부여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는 특허로 (www.patent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* 「실칙」 §17조(「특칙」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< 「특칙」별지 제29호서식(열람신청서) 뒤쪽 기재요령 중 일부 >

현 행
6. 【수취방법】란
가. 【수취방법】란에는 “방문수령(대전 송달함)”, “방문수령(서울 송달함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다만 특허(등록)증 정정 발급 및 휴대용 특허(등록)증 정정 발급의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.
나. (생략)

개정안
6. 【수취방법】란
가. 【수취방법】란에는 “방문수령(정부대전청사)”, “방문수령(서울사무소)” 및 “우편수령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 다만 특허(등록)증 정정 발급 및 휴대용 특허(등록)증 정정 발급의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.
나. (현행과 같음)

* 「실칙」 §17조(「특칙」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< 「특칙」별지 제29호의2 서식(외국어특허증 발급 신청서) 뒤쪽 기재요령 중 일부 >

현 행
8. 【수령방법】란
가. (생략)
나.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“방문수령(대전)”, “방문수령(서울)”, 또는 “우편수령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.
다. 대리인(변리사 또는 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)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“방문수령(대전 송달함)”, “방문수령(서울송달함)”, 또는 “우편수령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.
라. 수령방법을 “우편수령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개정안
8. 【수령방법】란
가. (생략)
나. “방문수령(정부대전청사)”, “방문수령(서울사무소)”, 또는 “우편수령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.
다. 수령방법을 “우편수령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* 「실칙」 §17조(「특칙」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□ 개정 효과

- 동일한 서류수령 장소에 대한 문구를 통일하여 출원인 혼란 방지

국가 R&D 출원의 통계정확성 제고

(「특칙」 별지 제14호서식 및 「실칙」 별지 제1호서식)

□ 제도 개정이유

- (제도현황)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 R&D 성과물을 특허출원 시, 출원서에 연구과제 명칭, 과제고유번호* 등을 기재할 필요

* 국가 R&D 관련 플랫폼(NTIS 및 IRIS)에서 R&D 과제고유번호를 부여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.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... (생략) ...

- (개정이유) 출원서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 →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&D 출원 통계의 누락 우려

□ 개정 내용

- NTIS 또는 IRIS 과제고유번호를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

< 「특칙」 제14호서식(특허출원서) 뒤쪽 기재요령 일부 >

현 행	개정안
10. 【기타사항】란 가.~바. (생 략) 사. 국가연구개발사업 (1) (생 략) (2)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 【과제고유번호】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. (생 략)	10. 【첨부서류】란 가.~바. (현행과 같음) 사. 국가연구개발사업 (1) (현행과 같음) (2)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 【과제고유번호】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또는 <u>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</u> 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. (현행과 같음)

현행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

- (1) (생략)
- (2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과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【과제고유번호】란에 “미부여”로 적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개정안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

- (1) (생략)
- (2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또는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*에서 과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【과제고유번호】란에 “미부여”로 적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< 「실적」 제1호서식(실용신안등록출원서) 뒤쪽 기재요령 일부 >

현행

10. 【기타사항】란

가.~바. (생략)

사. 국가연구개발사업

- (1) (생략)
- (2)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 【과제고유번호】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
(생략)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

- (1) (생략)
- (2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과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【과제고유번호】란에 “미부여”로 적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개정안

10. 【첨부서류】란

가.~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국가연구개발사업

- (1) (현행과 같음)
- (2)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 【과제고유번호】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또는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*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.

(현행과 같음)

⇒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

- (1) (생략)
- (2)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또는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*에서 과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【과제고유번호】란에 “미부여”로 적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□ 개정 효과

○ 국가 R&D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의 통계정확성 제고

□ 제도 개정이유

- (제도현황) 무효심판 시 청구항의 기재내용에 대하여, 청구항 해석 및 관련증거에 대한 원고·피고의 주장을 검토 후 심결 도출

* 청구항의 동일한 문언적 기재내용에 대해서도, 문언적 해석에 따라 선행 기술과의 동일성 판단결과 등에 차이 발생

- (개정이유)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의 기재내용에 대한 원고의 해석 및 관련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, 기재요령에 안내필요*

*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취지·이유란 등에 청구항의 기재내용에 대한 해석 및 관련증거를 기재할 수 있으나, 관련 안내문구는 미비한 상황

□ 개정 내용

- 원고가 원하는 경우, 무효심판 청구서에 청구항의 기재내용에 대한 원고의 해석 및 증거 등을 제출 가능하다는 안내문구 삽입

< 「특칙」 제31호서식(심판청구서) 뒤쪽 기재요령 일부 >

현 행	개정안
5. 【청구의 이유】란 가~마. (생략) (신설)	5. 【청구의 이유】란 가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특허(실용신안등록)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,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되는 해석,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 및 주장을 적을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「실칙」 §14조(「특칙」 §57조의 준용)에 따라, 실용신안에 대한 절차는 해당 규정을 준용

□ 개정 효과

- 무효심판 청구 시 원고의 청구항 해석 및 그 증거 등을 조기에 수집하여, 무효심판 절차의 효율성 향상 및 심결품질 제고 기대

Ⅲ. 추진 일정[안]

- ☐ 심사·출원시스템 개선 협의(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) : '25. 9월~
- ☐ 청 내·외 의견조회 및 협의 : '25. 9월~
- ☐ 관계부처 협의, 사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: '25. 9~11월
- ☐ 규제심사 : '25. 10~11월
- ☐ 법제처 심사 : '25. 11~12월
- ☐ 공포 : '25. 12월
- ☐ 시행 : '26. 1월